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17 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 강훈식 · 김용만 · 민형배

민병덕 · 김남근 · 이강일

남인순 • 문진석 • 윤준병

강준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,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기 곤란했음.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,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횡령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, 관련규정이 부재하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음. 따라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개별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·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

(안 제30조의2 등).

법률 제 호
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 중 "직접 또는 간접"을 "횡령, 배임, 직접·간접"으로 한다. 제72조제8항 중 "제31조제2항"을 "제30조의2, 제31조제2항"으로 한다. 제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.

제95조제4항 중 "제6조제3항·제4항"을 "제6조제3항·제4항, 제30조의 2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0조의2(수뢰 등의 금지) 조합	제30조의2(수뢰 등의 금지)		
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			
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	<u> 횡령, 배임, 직접·간접</u>		
여(贈與)나 그 밖의 수뢰(受賂)			
의 요구, 취득 또는 이에 관한			
약속을 할 수 없다.			
제72조(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)	제72조(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)		
① ~ ⑦ (생 략)	① ~ ⑦ (현행과 같음)		
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	8		
제27조의2, 제27조의3제1항, <u>제</u>			
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	제30조의2, 제31조제2항		
다.			
⑨ (생 략)	⑨ (현행과 같음)		
제73조(직원) (생 략)	제73조(직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		
	부분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②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		
	제30조의2를 준용한다.		
제95조(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	제95조(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		
특례) ① ~ ③ (생 략)	특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	4		
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			
여는 <u>제6조제3항·제4항,</u> 제39	<u>제6조제3항·제4항, 제30</u>		
조제1항제1호・제6호, 제42조,	<u> 조의2</u>		
제43조, 제45조, 제45조의3, 제			

78조제1항제3호(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·감독만 해당한다)·제5호, 제78조제6항, 제79조의2, 제83조, 제83조의2, 제83조의3, 제84조, 제89조제3항, 제96조, 제101조제1항제1호의3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